

仲裁研究, 第 17 卷 第 2 號
2007년 8월 1일 발행, pp.101-124

논문접수일 2007. 2. 2
제재확정일 2007. 7. 16

남북한 및 중국 중재제도의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n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신 군 재*
Koon-Jae Shin
이 주 원**
Joo-Won Lee

〈목 차〉

- I. 서 론
- II. 남북교역의 현황 및 문제점
- III. 남한·중국 중재제도와 북한 중재제도의 비교
- IV. 결 론

주제어 : 남북한의 중재제도, 중국 중재제도, 중재절차,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

* 신라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I. 서 론

1990년대에 들어 북한 경제는 누적되어온 내부의 문제점과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침체의 늪에 빠져 내부적으로는 경제정책을 통하여 내부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한의 통로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주)대우의 남포공단합영 사업을 시점으로 시작된 남북경협과 경제교류는 1994년도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 2006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체 남북교역의 확대, 경제협력사업 승인 증가, 개성공단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 3대 남북경협 등으로 양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의 교역(일반교역 및 위탁가공무역)은 교역의 인프라 및 관련 법제도의 기반 미비로 인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¹⁾. 즉, 남북한 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 그리고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 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는 상호간 중재제도의 차이로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며,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중재제도가 이용되지 못하였고 아울러 다른 분쟁의 해결수단이 없었다²⁾.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북한 간 분쟁은 중재이외에는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간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방법인 상사중재제도를 제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남북한 및 중국 중재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남북한 간 분쟁해결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의 중재제도를 포함시킨 것은 북한의 법과 제도 그리고 대외개방정책은 중국을 많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중재법이나 제도의 발전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³⁾. 예로서, 지난 1995년에 발표된 현행 ‘대외경제계약법’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⁴⁾. 북한이 섭외적 요소를 가진 분쟁을 국가중재와 별도로 대외경제중재법에서 규율하도록 한 것은 중국 중재법의 법제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남북교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상사중재제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남한과 중국의 중재제도와 비교한 북한의 중재제도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남한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유의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최수영, “남북 경협 활성화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2005.8.23, p.27.

2) 김상호, “개성공단개발과 상사분쟁의 해결”, 한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2005.5.13, p.90.

3)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모방함.

4)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 p.135.

II. 남북교역의 현황 및 문제점

1. 남북교역의 현황

북한은 대외경제 분야에서 개혁조치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남북경협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외자유치의 확대를 위해 북한은 신의주(2002.9), 금강산(2002.10) 및 개성(2002.11)을 특구로 추가 개방하고,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14개 합의서 및 22개 법·규정을 채택하고, 개성공단 시범단지개발과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⁵⁾. 남북경제협력은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경제외적 측면에서는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통한 남북한 간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및 북한 내부적으로의 경제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다소의 부침은 있었으나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⁶⁾

〈표 1〉 남북한 교역현황

단위 : 천불

년도	반출액	증가율	반입액	증가율
2006	830,200	16.0	519,539	52.7
2005	715,472	63.0	340,281	31.9
2004	439,001	0.9	258,039	-10.8
2003	434,965	17.5	289,252	6.5
1995	64,436	253.1	222,855	26.4

자료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2007년 1월31일 방문)

남북교역은 1995년도부터 위탁가공교역 및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도 2억8천6백만불(반출액 6천4백만불, 반입액 2억2천2백만불)이었던 교역량은 10년 후가 지난 2005년도에는 10억5천5백만불(반출액 7억1천5백만불, 반입액 3억4천만불)로 약 3.6배나 증가하였다. 2006년도에 북한의 핵실험 등 많은 정치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연구원, 2005, pp.33-34.

6) 김연철,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의미와 전망”,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통권 제74호, 2002.9, pp.7-10.

고, 13억5천만불(반출액 8억3천만불, 반입액 5억2천만불) 거래되어 전년대비 약 4.7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대북투자는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직후인 1995년부터 가시화되어 2003년말 현재 참여 업체수가 52개, 사업승인 건수는 27건이었다. 남북교역 및 대북 투자 등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수익성과 안정성이 불확실하여 거래성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승인 추이

	'92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합계 (A)	승인 취소 (B)	현존 승인 (B-A)
사업자	1	0	6	4	16	13	2	1	6	3	4	56	4	52
사업	0	0	1	0	5	9	1	2	5	2	2	27	0	27

자료 : 통일부(<http://www.uniedu.go.kr>, 2006년7월31일 방문)

2. 문제점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2002년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한 이래 사업개혁, 농업개혁, 기업개혁 등 후속조치를 잇달아 실시하고 있지만, 개혁·개방노선에 대한 공식 천명이 없고, 행정개혁 즉 당의 경제개입차단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⁷⁾.

남북교역에 있어 문제점은 경제적인 측면과 법적·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교역의 문제점으로는 간접교역으로 인한 추가비용발생, 의사소통의 문제, 일차산품 중심의 거래품목, 북한의 외환부족 등이 있다. 위탁가공무역의 문제점으로는 섬유류가 대부분이고,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과다한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북한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제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문제 등등이 있다. 북한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법을 제정하였는데, “공업국 법전(2000년, 103건 중 46건)”, “대중용 법전(2004년, 112건 중 48건)”에 수록된 법률 중 절반이 경제 관련 법률이다. 경제부문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개편하고, “외국인기업법(2004 개정)”,

7)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연구원, 2005, p.8.

“합작법(2004 개정)”, “외국인투자법(2004 개정)” 및 “합영법(2004 개정)” 등을 정비하였고, 2005년도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대외경제법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북남경제협력법”에서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4년 1월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북투자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법적 문제는 분쟁해결장치가 미진하다는 점이다⁸⁾.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대북 클레임 및 분쟁해결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북 교역업체의 클레임 처리실태를 보면 「전액 손실감수(29.8%)」와 반입단가 인하(22.8%)에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인 반면 「대금지급보류(8.8%)」와 「현금으로 회수(1.8%)」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북교역업계에서 지적한 바람직한 클레임 예방·해결 방안으로는 「자유로운 통신 및 방북을 통한 품질관리 허용(61.4%)」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이 「기술 및 품질관리 요원의 파견 근무 허용(21.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가 클레임 발생시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예방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⁹⁾.

〈표 3〉 남북경협시 애로사항(복수응답)

(응답수, %)

문항	단순교역	위탁가공	전체 ²⁾
고물류비	14 (11.1)	21 (15.2)	38 (13.6)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24 (19.0)	20 (14.5)	44 (15.8)
계약 불이행	15 (11.9)	5 (3.6)	23 (8.24)
품질불량	23 (18.3)	22 (15.9)	37 (13.3)
북측의 일방적인 단가인상	15 (11.9)	7 (5.1)	23 (8.2)
쿼터배정 문제	8 (6.3)	9 (6.5)	17 (6.1)
까다로운 통관절차	1 (0.8)	9 (6.5)	13 (4.7)
통행 애로	8 (6.3)	18 (13.0)	31 (11.1)
통신 애로	7 (5.6)	18 (13.0)	31 (11.1)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10 (7.9)	7 (5.1)	19 (6.8)
기타	1 (0.8)	2 (1.4)	3 (1.1)
계	126 (100)	138 (100)	279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06년 남북교역 전망 및 애로조사”, 2006.2, p.18.

주 : 1. ()내는 구성비

2. 전체에는 대북투자 및 운송업체 포함

8) 최수영, “남북 경협 활성화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2005.8.23, pp.27-29.

9) 김광수·박윤환, “남북 상사중재의 현안에 관한 고찰”, 「남북한 교역확대와 당면과제」, 한국국제상학회 학제 정기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5.6.17, p.103.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교역의 애로점으로는 단순교역이든 위탁가공이든 클레임해결수단부재가 각각 19.0% 및 1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클레임해결수단의 부재가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경협을 경제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¹⁰⁾. 북한의 소송이나 중재절차가 공정성 및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 상사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¹¹⁾. 따라서, 클레임해결수단의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 발효)’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5 발효)’에서 상호 인정하고 있는 중재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에 따른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한과 중국의 중재제도와 비교한 북한 중재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무적으로 고려하여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III. 남한·중국 중재제도와 북한 중재제도 비교

1. 일반적 특성

(1) 중재법 제정과정

남한은 1966년 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세 차례의 부분 개정에 이어 1999년 12월 31일 자로 UNCITRAL 모델법을 전면 수용하여 거의 제정에 가까운 개정을 함으로써 중재제도를 국제화하였다. 중재법에서는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여 중재제도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적정성과 공평성을 강조하고 국내외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1994년 이전까지 통일된 중재법이 없고 각 중재관련 기관들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중재가 행해져 왔었다. 즉, 국내중재는 여러 중재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인 중재로 행해졌고, 외국기업과의 중재는 CIETAC¹²⁾에서 행해져 왔었다. 중국은 1994년에 민간적 성격과 행정적 성격을 갖는 중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을 통과시

10) 최수영, 전개논문, p.29.

11) 전정기, “남·북한 교역확대에 따른 상사중재의 필요성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5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 한국무역학회, 2005, p.11.

1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ttee).

켰으며¹³⁾, 비교적 큰 도시에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현행 중재법은 중국의 자체적인 입법경험을 집약함과 동시에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관행 및 서구 국가들의 중재법, 뉴욕협약¹⁴⁾와 같은 국제조약 등에 나타난 장점을 고루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의 중재제도는 국가중재제도와 대외경제중재제도로 2원화되어 있다. 북한은 중재에 관하여 “다투는 두 당사자 사이의 경제거래 과정에 제기되는 분쟁문제들에 대하여 시비를 가르고 해결을 내리는 중재기관의 활동”이라고 하고. “중재를 분쟁성격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비롯하여 국가중재, 무역중재, 국제중재를 비롯하여 국가중재, 무역중재, 국제중재 등으로 구분”하였으나¹⁵⁾, 현재는 국가중재제도와 대외경제중재제도로 나누어지고 있다. 북한의 국가중재는 개인이 아닌 경제기관·기업소·단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국가재판활동¹⁶⁾으로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조절 통제를 실현하는 법적 형식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¹⁷⁾은 외국인투자유치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법원의 미비성, 불완전한 법률구조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채택되었다¹⁸⁾. 즉,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 계약법 등 단행법률별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총괄하는 기본법이다¹⁹⁾. 동 법 적근거에 따라 상설중재기관인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가 외국과의 상품구매 및 판매, 위탁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상청구와 관련된 분쟁과 수송, 보험, 보관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분쟁들을 중재로 해결하고 있다²⁰⁾.

일반적으로는 중재법은 단일 중재법으로 제정을 하고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혹은 기타 어떤 다른 중재에 관련된 사항은 중재규칙에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²¹⁾. 이에따라, 남한과 중국의 중재법은 국내 및 국제중재를 불문하고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통일된 하나의 중재법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중재법은 국내중재는 사회주의 국가의 중재제도를 계승한 국가중재와 국제중재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별도로 제정된 대외 경제중재로 2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2원화된 중재법은 단일 중재법을 갖고 있는 남한 기

13) 현행 중재법은 1995년 9월1일부터 실시함.

1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15)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4집, 북한법연구회, 2001, pp.63-64.

16) 상계논문, p.64.

17) 대외경제중재관련 법규는 1999년 7월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 채택된 '대외경제중재법'과 1989년1월4일 북한 무역부 지시 제2호로 채택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무역중재위원회 사건심의규정이 있다.

18) 김상호·강명주, "남북교역 및 대북 투자분쟁의 해결",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세17권 제2호, 2002.8., p.171.

19) 김상호,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과제", 한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2004.9.4., p.52.

20) 김평수, "최근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에 대한 개관",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6 여름, pp.48-49.

21)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한 체계를 취하고 있음.

업에게는 북한 기업과의 분쟁이 국내 및 국제 중 어느 중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2) 주요 특징

1) 당사자자치의 원칙

남한 중재제도는 당사자자치원칙을 존중하였다. 남한의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당사자는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중재절차에 관한 적용법규, 증거조사의 범위와 종류, 각종 통지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중재절차를 정할 수 있거나, 또는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를 것을 합의할 수 있다²²⁾. 즉, 남한에서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칙적 규정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²³⁾.

중국 중재법도 중재합의를 중재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중재기관은 서면중재합의가 있는 사건만 접수하도록 하였으며²⁴⁾, 중재조항은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과는 분리하도록 하였다²⁵⁾.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도 분쟁당사자들 간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분쟁을 접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직소금지의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중재법상 중재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관중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별도로 중재절차를 합의하는데 있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따르도록 제약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2005년 CIETAC이 중재규칙을 개정하면서 완화되어,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⁶⁾. 즉, 당사자들이 CIETAC의 중재인명부 이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⁷⁾.

북한의 중재제도는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강제적·공권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당사자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관의 재판권에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중재기관의 재판대상에 속하는 분쟁을 국가중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낸 중재제기(중재신청) 문건에 의하며, 서면합의에는 계약에 포함되

22)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주석 중재법」, 2005.12., p.91.

23) 상계서, p.4.

24) 중국 중재법 제16조.

25) 중국 중재법 제19조.

26) CIETAC 중재규칙 제4조 :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만일 당사자간에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한다고 약정하거나, 본 규칙의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을 경우 동 합의에 따른다. 그러나 합의내용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중재지의 강제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7) CIETAC 중재규칙 제21조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제공한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합의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선정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정한 자는 중재위원회 주임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인정받고, 중재인, 의장중재인 및 단독중재인으로 될 수 있다.

어 있는 중재조항과 분쟁발생 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²⁸⁾. 북한의 대외중재제도에서는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사건을 접수하면, 당사자에게 중재인명단을 송부하여 그 명단 내에서 당사자들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중재인 수, 중재인 선정, 및 의장 중재인 선정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지 못한 경우 중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중재인은 반드시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선택권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남한 기업은 북한법에 익숙하지 않으며, 무역 및 해외투자의 경험이 미천하여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이 국제분쟁해결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자체도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남한과 중국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직소금지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중재조항은 계약조항과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중재합의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다만, 남한의 중재법은 임의중재로 당사자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에 중국의 중재법은 기관중재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국가중재는 당사자 합의가 아닌 국가중재기관의 재판대상에 속하는 분쟁을 국가중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다. 국제중재의 경우는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재판기관은 해당 사건을 소송 제기자에게 돌려주도록 직소금지의 규정은 있지만²⁹⁾, 본 계약과 중재계약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중재규칙이나 중재인명부이외의 중재인 선택권에 대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중재기관의 독립성

남한 중재법 제8장 보칙에서는 상사중재제도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은 회원들로서 이루어진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운영이나 중재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이다. 즉, 대한상사중재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회원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순수민간단체의 기관이다.

중국 중재법은 중국중재협회를 사회단체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의 범위는 민·상사분쟁중 사법상의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국중재협회는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중재절차는 행정부나 사회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섭외중재를 관장하는 CIETAC은 사회단체로 일컬어지는 중국국제상회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국국제상회는 국

28) 김광수, 전개논문, p.49.

29) 북한 중재법 제16조.

무원 대외무역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으며, 주임이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중국 당정의 고위 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중재기관은 법원과는 독립된 판정을 내리고 있다. 중재법에서는 일심종결(一裁終局)의 원칙을 명시하여,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경우에 중재위원회 혹은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일심종결(一裁終局)의 원칙에 의하여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감독권은 주로 중재판정의 취소 및 집행의 거부라는 2개의 권한에 한정되어 있다. 즉,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중국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북한의 유일한 상설적 국제무역중재기관으로서 ‘대외경제위원회’산하의 반관반민 단체적 성격을 지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직속기관이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는 남한의 중재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책임비서를 임명한다³¹⁾. 또한 사유재산제도가 없는 북한에서 반민(半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가 관(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북한의 중재기관은 완전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是很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시 인정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쟁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분쟁해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³²⁾. 따라서, 남한 기업은 북한의 중재법에 의한 중재보다는 남북한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구성운영합의서에 의한 남북간 상사중재사무처리기관에 의한 중재를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 및 국내 중재의 이원화 여부

남한의 중재법에서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여 국내·국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2006년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여 대법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2007년 2월부터는 국제사건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일반 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따라서 이 규칙은 중재합의에서 이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국제 중재사건에만 적용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중재사건은 일반 중재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1994년 이전까지는 통일된 중재법이 없었고 각 중재기관들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섭외중재 및 외국중재)로 2원화되어 있었으며, 실무적으로 중재기구, 적용법규 및 중재규칙이 달리 적용되었다. 중국은 2003년에 160개 이상의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³³⁾, 섭외중재의 경우는 CIETAC에서만 행하도록 하고 있었

30) 윤진기, “중국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p.245.

31)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4호, 북한법연구회, 2001, pp.96-97.

32) 김상호·강명주, 전계논문, p.172.

33) Li Hu, “An Introduc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Dispute Resolution Journal*, May-Jul. 2003, p.81.

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내의 모든 중재기관들은 국내·국제사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외국에서도 집행이 보장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의 중재판정도 중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³⁴⁾.

한편, 북한의 중재제도는 1994년까지의 과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2원화되어 있다. 국내중재는 사회주의국가 특유의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 민사재판과 행정절차를 혼합한 국가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진다. 국제중재는 1999년 7월 채택된 ‘대외경제중재법’과 1989년1월 채택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무역중재위원회 사건심의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현행 북한 중재법의 문제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 국가중재에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대외경제중재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점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북한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중재의 대상이 되어 제3국의 중재기관을 활용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하다³⁵⁾.

남한과 중국은 국내·국제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된 중재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국제중재를 위한 특별규정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남한은 1999년 중재법 개정 시 국제중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완전히 국제화를 시켰으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도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한편, 북한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법이나 제도상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국제중재를 위한 별도의 법과 기관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기관중재

남한에서는 중재법의 거의 대부분 규정들이 임의규정들이어서 거의 모든 절차에 있어 당사자합의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기관중재에 합의하지 않는 한 임의중재를 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 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기관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16조 3항에는 당사자가 중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재위원회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중재법 제18조에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는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중재를 배척하였다³⁶⁾. 다만, CIETAC 2005년 중재규칙에 의하면, “당사자가 CIETAC의 규칙에 따라 중재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중재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CIETAC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³⁷⁾하여 중재위원회가 특정

34) CIETAC은 2000년 개정중재규칙에 의하여 섭외중재이외에도 국내중재사건도 수리하고 있다.

35) 윤상직, “북한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 대외경제중재법 상의 무역 중재를 중심으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0.2., p.75.

36) Li Hu, op. cit., p.84.

37) CIETAC중재규칙(2005) 제4조 제3항

되지 않은 경우 요건흡결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있다³⁸⁾.

북한의 중재법도 의무적으로 기관중재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절차들은 중재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예로서, “합영법”에서는 분쟁해결의 방식으로서 북한의 중재기관에서의 중재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중재는 국가중재제도와 국제 경제중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국가중재부’라는 단일한 조직·구성체계하에서 평양에 중앙중재기관이, 각 도(직할시)에 도(직할시) 중재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는 북한법에 의해 설립된 중재위원회의 중재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하여)의 중재는 중재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외중재법 제17조에서는 국제조약 및 관례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과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워싱턴협약에 미가입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중재관련 조항들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중국처럼 대외중재의 경험도 풍부하지 않아 북한의 기관중재에 의한 중재는 남한 기업들에게 공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남한은 임의중재인 반면 중국과 북한은 기관중재이다. 그러나, 중국은 법적으로는 기관중재를 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뉴욕협약이나 워싱턴협약에 가입되어 외국 중재판정도 승인하여 주고 있으며, CIETAC에서는 타 중재규칙을 합의한 경우 이를 채택 할 수 있고, 당사자합의에 의한 요건흡결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이에 대한 보완적인 규정이 전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중재계약

중재계약이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며, 중재합의라고도 한다. 중재계약은 서면에 의한 별도 합의 또는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남한의 중재법은 ‘중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등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조항이 포함된 문서를 인용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재계약은 중재조항, 독립적 중재합의 및 기타 형태 등 3가지 형태로 이루어 진다. 기타 형태에 의한 계약은 서한, 팩스 전신, 텔레스 등등으로 교환된 교신에서 당사자가 서면상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만 한다면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된다³⁹⁾. 중

38) 윤진기,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2. p.109.

39) Song, Kevin Ying Yue, "How to prepare and conclude an arbitration agreement", *East Asian Executive Reports*, 1995, 9.15, p.8.

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계약에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함으로써 중국에서는 중재계약 내용 속에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⁰⁾.

한편,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들이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낸 중재제기 문건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 해결하는 무역중재기관의 활동으로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들의 무역상사들간에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중재원(중재인)을 선정하여 해결하는 법적 수단⁴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 방식으로는 서면합의로서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과 분쟁발생 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⁴²⁾. 북한 대외경제중재위원회심문규칙에 의하면 비록 중재대상 분쟁에 해당하더라도 쌍방 당사자사이에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없으면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³⁾.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남한, 중국 및 북한 모두 중재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한과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그 형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형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중재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 중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의중재를 배척하고 있다.

3. 중재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의 개시부터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진행과정을 의미하며,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⁴⁴⁾. 남한의 중재법에서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⁴⁵⁾,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강제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⁴⁶⁾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기관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재인수, 중재인선정절차, 중재인기피절차, 중재인의 보궐 등에 대한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05년 개

40) 중국 중재법 제18조.

41)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p.87(북한의「법학사전」, 82면 참조)에서 재인용.

42)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5조.

43) 북한 대외경제중재위원회 심문규칙 제2조 및 사건처리규정 제3조.

44)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2002.3, p.353.

45) 대한민국 중재법 제19조.

46) 대한민국 중재법 제20조.

정 CIETAC의 중재규칙에 의하면, 당사자가 다른 중재규칙이나 이 규칙의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한다고 규정⁴⁷⁾되어 있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반드시 따르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별도의 중재절차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규정들의 내용 상 당사자간의 합의를 허용하는 부분이 없고 다만 중재계약이 있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남한과 중국은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반면에 북한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별도의 중재절차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중재인 선정

“좋은 중재는 좋은 중재인이다”라는 명제처럼, 중재인의 선정은 중재의 핵심이며, 중재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안을 심판하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필요하다. 중재개시는 주로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련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중재판정부는 자체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한 쟁점은, 우선 몇 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둘째, 중재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셋째, 중재인이 될 요건과 어떠한 근거에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지와, 어떠한 방법과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남한에서는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제1원칙으로 한다. 이는 중재합의를 실체 법적인 시각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계 대부분의 중재기관들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중재인 선정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그 합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하여 각 당사자가 1인씩 중재인을 선정⁴⁹⁾하고, 이렇게 선정된 두 중재인이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만일 이러한 절차가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해당 중재인을 선정한다⁵⁰⁾. 그러나, 만일 당사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47) CIETAC 중재규칙 제4조.

48) 비슷한 예로는 미국의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일본의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및 ICC 중재재판소 등을 들 수 있다.

49) 필자는 중재인을 지명(appointment)하는 경우와 선정(selection)하는 경우를 달리 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각국의 중재규칙을 보면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중재인을 후보자의 제시없이 당사자나 사무국 혹은 기타 선정권자가 직접 지명하는 경우에는 “지명(appointment, nomination)”을 사용하나, 사무국에서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여 그 중에서 중재 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select, choo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대부분 중재인을 지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후보자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은 ICSID 및 AAA의 일부절차에서 보여지고 있다.

50) 대한민국 중재법 제12조.

에는 이 규칙이 당사자들의 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이 선정된다. 이 규칙에 의하면 사무국이 중재인 수를 결정하며, 선정방식은 몇 배수의 중재인후보자를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여 당사자들의 선호도가 공통적으로 높은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⁵¹⁾. 그리고 중재법 상에는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중재인 기피에 대한 규정들⁵²⁾만 있을 뿐이다. 또한 중재인 기피절차를 보면 먼저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판정부가 기피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 결정이 당사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 당사자의 선정과 중재기관의 지정을 결합한 특수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3인 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지정을 위임하여야 하며, 제3중재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⁵³⁾. 또한 1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⁵⁴⁾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⁵⁵⁾. 중국의 각 중재위원회는 중재인명부를 구비하여야 하며, 중재인들은 반드시 이 명부에 있는 중재인들 중에서 지명되어야 한다⁵⁶⁾. 또한 중국에서도 당사자의 친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재인을 기피신청할 수 있으나,⁵⁷⁾ 그 결정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하며,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판정부를 맡았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공동결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⁵⁸⁾.

북한의 중재에서는 중재심리는 중재인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하며, 중재인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적이며, 분쟁당사자를 대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⁵⁹⁾. 분쟁을 심리해결하기 위한 중재인의 수는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가 그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⁶⁰⁾. 분쟁을 심리할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분쟁당사들이 정해진 기간안에 중재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였다⁶¹⁾. 또한, 중재인을 1인 또는 3인으로 할

51) 대한상사중재규칙 제21조.

52) 대한민국 중재법 제13조.

53) 중국 중재법 제31조

54) CIETAC 중재규칙에 의하면 15일의 기한을 두고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22조).

55) 중국 중재법 제32조

56) 김덕수·주건립, “중국 CIETAC의 중재제도와 한중양국의 주요중재문제”, 「중재학회지」, 한국중재학회, 1998, p.92.

57) 중국 중재법 제34조.

58) 중국 중재법 제36조.

59)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18조.

60)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21조.

것인지를 합의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사건의 내용, 중요도 등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한다⁶²⁾. 북한 측 거래상대방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상사가 되는데 그들은 국제법 관행이나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다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하는 경우⁶³⁾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선정 방식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공정한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한편,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당사자들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중재인과 재판장 혹은 단독중재인 제척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반드시 심문시작 전에 해야 하며⁶⁴⁾, 신청된 제척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 소속된 중재인들이 내리도록 하였다⁶⁵⁾.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인이 제척결정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중재인 제척신청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다.

이상을 살펴보면, 중재인 선정방식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장중재인이든 단독중재인이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남한은 법원에서 중국과 북한은 중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중국과 북한의 차이점은 중국은 CIETAC의 중재인 명부 이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은 꼭 중재인 명부에서만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명부에 있는 중재원 수가 17인 밖에 되지 않는 상황, 당사자들이 중재인 수나 의장중재인을 정하지 못할 경우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징 및 중재인 제척제도의 효과성 미비 등 북한 중재의 중재인 선정방식은 북한 출신 중재인들이 시장경제 체제와 법규범을 잘 모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한 기업들에게는 중재인 선정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선정된 중재판정부의 독립성 및 중재인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5. 대리인

남한에서는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의 대리를 변호사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나, 중재판정부가 대리인이 중재절차 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다⁶⁶⁾. 그러나, 남한에서는 보수를

61) 박정원, 전계논문, p.79.

62) 북한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심문규칙 제21조.

63) 김광수,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도 국제 e-비즈니스학회 · 국제통상정보학회 공동발표논문집, 2007. 01., p.232..

64) 북한대외무역중재위원회 심문규칙 제27조.

65) 북한대외무역중재위원회 심문규칙 제28조.

6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7조

받고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변호사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고, 또한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도 비변호사가 금전을 수수하고 중재대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⁶⁷⁾.

중국은 외국변호사에 대하여 소송대리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변호사는 단지 변호사의 자격이 아닌 단순한 대리인의 자격에서 중국의 중재재판절차와 상사분쟁 등의 법률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북한은 소송절차나 중재절차에서 누가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대리인으로는 공화국 공민이나 외국인이 모두 될 수 있는데, 다만 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대리위임장을 내야만 한다⁶⁸⁾. 남한과 중국에서는 대리인제도에 대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소송이나 중재절차의 대리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 상사중재사무처리기관에서 향후 제정할 남북한상사중재규칙에서는 남한 기업들이 보다 중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 또는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면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중재판정 및 집행

중재판정부는 전문적 시견을 가지고 증거의 신빙성과 유용성을 바탕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다⁶⁹⁾.

(1) 의사결정제도

남한의 중재에서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재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⁷⁰⁾. 중재인 일부가 중재판정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중재판정합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중재인들만의 합의로 결정한다⁷¹⁾. 또한 당사자가 중재절차중 화해를 하고,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판정부는 합의된 화해내용을 판정

67) 서정일 · 조근식. “비변호사의 중재대리에 관한 연구”, 「중재제도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대한상사중재원, 2001, p.96.

68)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16조.

69) 홍성규, 전개서, p.427

70) 대한민국중재법 제30조.

7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48조.

으로써 기재할 수 있다⁷²⁾.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은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을 내리되, 소수 중재인의 의견도 중재판정문에 기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한다⁷³⁾. 당사자가 중재 신청을 한 후에 화해를 한 경우 화해내용을 근거로 중재판정문을 작성해줄 것을 중재판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⁴⁾.

북한의 중재판정문에는 반드시 중재인의 서명과 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지며, 북한의 중재에서 중재판정은 다수결에 따르되,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중재원에 수표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재심리조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중재위원회에 내도록 되어 있다⁷⁵⁾. 또한 화해결정은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⁷⁶⁾. 남한의 의사결정방식은 과반수의 결의라고 명시한 반면 중국과 북한의 중재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재인을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정하지 못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 중국과 북한의 특성으로 볼 때, 남한 기업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2)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내려지면 당사자들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

남한에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⁷⁷⁾. 다만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문 정본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해당하는 사유⁷⁸⁾

72) 대한민국중재법 제31조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3조.

73) 중국 중재법 제53조.

74) 중국 중재법 제49조.

75)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38조.

76)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39조.

77) 대한민국중재법 제35조.

78) 제 36 조 제2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⁷⁹⁾.

중국의 중재는 단심재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판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으로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⁸⁰⁾.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⁸¹⁾.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사확인 후 집행을 하지 않도록 결정한다⁸²⁾. 중재판정의 취소는 당사자가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58조⁸³⁾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후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⁸⁴⁾.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중국 중재법은 국내중재의 경우 법원이 집행 단계에서 시안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섭외중재의 경우에는 중재법 규정상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중재법에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중재판정에 이견이 있는 당사자는 판정문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일부 표현과 내용을 수정 보충하거나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을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재판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⁸⁵⁾ 실질적으로는 중재를 합으로써 4심재가 될 소지가 많다. 북한 중재법의 특이한 점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기간만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판정문에서 지적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재판기관에 해당 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

-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때
-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79) 대한민국중재법 제36조.

80) 중국중재법 제9조.

81) 중국 중재법 제62조.

82) 중국 중재법 제63조.

83) 중국 중재법 제58조 당사자가 재결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재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 (1)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 (2) 재결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
- (3)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 (4) 재결시 근거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 (5)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재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하였을 경우
- (6) 중재원이 해당 사건 중재시 뇌물을 강요, 수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위법적 재결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재결 중 전 항에 규정한 경우 중의 하나가 있음이 심사 확인되면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해당 재결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84) 중국 중재법 제60조.

85)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41조.

있고⁸⁶⁾,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재판기관에 판정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⁸⁷⁾고 하였다. 또한, 남한과 중국에서는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⁸⁸⁾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중재법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규정에 비추어 최종적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중재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시 6개월 내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중재합의의 유효성, 중재절차상 적법절차위반, 중재인의 월권, 공공질서위반 등등의 취소사유라든지 구체적인 취소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구제조치가 없다는 점을 남한 기업들은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방화와 더불어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대외경제중재법은 많은 국가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UNCITRAL 모델법이 아닌 사회주의국가체제에 입각하여 제정되어 우리와는 많은 다른 점을 갖고 있다. 북한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은 기관중재를 기초로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는데 당사자자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상사 및 투자와 관련된 대외경제 전반에 걸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여 국내중재와 구분되는 국제중재를 위한 별도의 법과 기관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북한의 경우는 남한과 중국과는 달리 중재법 상에 중재계약의 서면 형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넷째, 북한은 보전신청을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중재판정부에 의해 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재산을 은닉하고자 할 경우 이를 막을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중재위원회의 중재인명부에 있는 중재인들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중재위원회 명부에 있는 중재인의 수가 17인 밖에 되지 않아 거래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없고, 거래관행에 따른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여섯째, 북한은 소송이나 중재절차의 대리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북한의 중재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취하나,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나 중재판정취소사유에 대한 구체성이

86)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42조.

87)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43조.

88) 대한민국중재법 제35조 및 중국중재법 제9조.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외경제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의 중재제도를 답습하여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법”에서는 당사자가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중재는 위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남한과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고, 현재 뉴욕협약과 위성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첫째, 계약서상에 남북경제협력법에 따라 중재로 행한다는 중재조항을 삽입하여야 하고, 둘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 중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재기관으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거래에 앞서 북한기업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구성운영합의서에 의하여 하루빨리 남북간 상사중재사무처리기관이 지정되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중재규정이 제정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남한 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규칙을 제정할 때는 피제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조치와 중재판정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중재제도 전반에 관한 특징을 상학적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남한과 중국 중재제도와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를 통해 북한 중재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한다든지 각각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재계약, 중재절차, 중재인 및 중재판정의 집행 등등에 대한 북한 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광수, “최근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에 대한 개관”, 「중재」, 여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6.
- 김광수·박윤환, “남북 상사중재의 현안에 관한 고찰”, 「남북한 교역확대와 당면과제」, 한국국제상학회 학제정기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5.6.17.
- _____,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도 국제 e-비즈니스학회·국제통상정보학회 공동발표논문집, 2006.1.
- 김덕수·주건립, “중국 CIETAC의 중재제도와 한중양국의 주요중재문제”, 「중재학회지」,

- 한국중재학회, 1998.
- 김상호,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과제”, 한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2004.9.4.
- _____, “개성공단개발과 상사분쟁의 해결”, 한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2005.5.13.
- 김상호·강명주, “남북교역 및 대북 투자분쟁의 해결”,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7권제2호, 2002.8.
- 김연철,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의미와 전망”,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통권 제74호, 2002.9.
-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연구원, 2005.
-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주석 중재법」, 2005.12.
-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_____, “북한의 대외경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4호, 북한 법연구회, 2001.
-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
- 서정일·조근식, “비변호사의 중재대리에 관한 연구”, 「중재제도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대한상사중재원, 2001.
- 윤상직, “북한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 대외경제중재법 상의 무역 중재를 중심으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0.2.
- 윤진기, “중국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 _____,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2.
- 전정기, “남·북한 교역확대에 따른 상사중재의 필요성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5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 한국무역학회, 2005.
- 최수영, “남북 경협 활성화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2005.8. 23.
- 한국무역협회, “06년 남북교역 전망 및 애로조사” 한국무역협회, 2006.2.
-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2002.3.
- Li Hu, “An Introduc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Dispute Resolution Journal*, May-Jul. 2003.
- Song, Kevin Ying Yue, "How to prepare and conclude an arbitration agreement", *East Asian Executive Reports*, 1995.9.15.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n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Koon-Jae Shin
Joo-Won Lee

The legal systems and open-door policies to foreign affairs in North Korea have been followed by those of China. Whereas an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accepted most parts of UNCITRAL Model Law, North Korea has succeeded to an arbitration system of a socialist country. China, under the arbitration system of socialist country, enacted an arbitration act reflected from UNCITRAL Model Law for keeping f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We have used these three arbitration system as a tool for analyzing an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With an open-door policy, North Korea and China enacted an arbitration act to provide a legal security. Therefore, the core parts of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based on a socialist system while those of South Korea is on liberalism. So, North Korea and China enacted an arbitration act on the basi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on the other side, South Korea is based on ad-hoc arbitration. Because of these characters, in terms of party autonomy, it is recognized with the order as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Also North Korea enacted separat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foreign economies including commercial things and investments.

There are differences in arbitration procedures and appointment of arbitrators : South Korea recognizes parties' autonomy, however parties should follow the arbitration rules of arbitration institutes in North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an appointment of arbitrators, if parties fail to appoint co-arbitrators or chief arbitrators by a mutual agreement, the court has the right to appoint them. In case of following KCAB's rules, KCAB secretariats take a scoring system by providing a list of candidates.

A party has to appoint arbitrators out of the lists provided by arbitration board(or committee) in North Korea. If a party may fail to appoint a chief arbitrator, President of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Board(or Committee) may appoint it. In China, if parties fail to appoint a co-arbitrator or a chief arbitrator by a mutual agreement, Secretary general will decide it. If a arbitral tribunal fails to give a final award by a majority decision, a chief arbitrator has the right for

a final decision making.

These arbitration systems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one of concerns that our companies take into account in conducting arbitration procedures inside China. It is only possible for a party to enforce a final arbitral award when he applies an arbitration inside North Korea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Act because North Korea has not joined the New York Convention. It's doubtful that a party might be treated very fairly in arbitration procedures in North Korea because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Commission controls(or exercises its rights against)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or Board).

Key Words :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Institutional Arbitration, Ad-hoc Arbitration, Impartiality of Arbitrator